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1261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종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1. 15.

판 결 선 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 2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C에게, ① 2000. 6. 27. 500만 원을 변제기 2002. 6. 26., 이자율 연 13%,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01. 4. 10. 1,000만 원을 변제기 2004. 4. 9., 이자율 연 12.9%,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③ 2001. 7. 9. 790만 원을 변제기 2004. 7. 8., 이자율 연 12.9%,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④ 2001. 8. 20. 390만 원을 변제기 2002. 8. 19., 이자율 연 13%,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이 위 각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61139호로 잔존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2. ‘C은 원고에게 25,711,955원 및 그 중 22,969,412원에 대하여 2003.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17. 9. 29.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의 아버지인 E이 2018. 12. 29.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가 3/13 지분, 자녀들인 F, G, H, I, C이 각 2/13 지분의 비율로 E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와 C을 비롯한 E의 상속인들은 2019. 1. 25.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2. 1. 별지 목록 순번 1, ②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0. 같은 목록 순번 3, ④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상속지분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C이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C이 2001년경 근무하던 회사의 공금 1억 4,300여만 원을 횡령하여 퇴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E이 위 무렵 적금을 해약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후 회사에 1억 1,3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C이 E으로부터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C의 실제 상속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C이 생전 증여에 따른 특별수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그 실질이 상속의 포기와 동일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상속의 포기와 구체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법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그 취지와 법적 성질, 형식과 내용 등이 엄격히 준별되는 것으로 이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북부등기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은 반복되었다.

피고는 E과 60년 이상 부부로 지내면서 C을 비롯하여 5남매를 양육 및 부양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유지에 주도적인 역할과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C이 피고와 같은 주소지에서 살아오기는 하였지만,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 받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E이 남긴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피고 또한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C을 비롯한 E의 자녀들이 고령인 어머니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나 주거지 확보 등을 위해 취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결국,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철

부동산 목록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 109㎡.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벽돌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54.55㎡

2층 44.63㎡

3. 전라남도 영광군 답 2780㎡

4. 전라남도 영광군 답 855㎡

- 이 상 -